

문서번호	건축기획과-5413	주무관	건축설비팀장	건축기획과장	주택건축정책관	주택정책실장
결재일자	2013.3.21.					
공개여부	대시민공개					
방침번호		협 조	주무관 주무관			

함께 만드는 서울, 함께 누리는 서울

건축물 에너지소비총량제 전면시행 등을 위한 용역시행추진계획

2013. 3.

주택정책실
(건축기획과)

사건 검토항목

∴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'무 ■' 표시하시기 바랍니다.

검토항목	검 토 여 부 (■ 표시)
시민 참여 고려 사항	● 시민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) 무 ■
	● 이해당사자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) 무 ■
	● 전문가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) 무 ■
	● 음 브 즈 만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) 무 ■
법령 및 기타 고려 사항	● 법령 규정 : 교통 <input type="checkbox"/> 환경 <input type="checkbox"/> 재해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 ■ (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) 무 <input type="checkbox"/>
	● 기타 사항 : 고용효과 <input type="checkbox"/> 노동인지 <input type="checkbox"/> 균형인지 <input type="checkbox"/> 홍보 <input type="checkbox"/> 취약계층 <input type="checkbox"/> 성인지 <input type="checkbox"/> 장애인 <input type="checkbox"/> 디자인 <input type="checkbox"/> 갈등발생 가능성 <input type="checkbox"/> 유지관리 비용 <input type="checkbox"/> 무 ■
타 자 원 의 활 용	● 중앙부처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) 무 ■
	● 민간단체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) 무 ■
	● 기업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) 무 ■
관계 기관 및 단체 협의	● 관계 기관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) 무 ■
	● 민간 단체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) 무 ■
	● 시 산 하 기 관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) 무 ■

건축물 에너지소비총량제 전면시행 등을 위한 용역 시행 추진 계획

건축물의 에너지소비총량제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하고, 숙박, 판매시설 등 다양한 실용도에 대한 프로파일 개발 및 2016 패시브, 2023년 제로에너지 실천 로드맵 작성을 위한 “건축물 에너지소비총량제 전면시행 등을 위한 기술용역”을 시행하고자 함.

I 추진배경 및 목적

□ 추진배경

- 서울시 에너지소비량의 63% 차지하고 있는 건물부문의 에너지 수요를 감축하기 위해 에너지 다소비형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소비총량제에 포함할 필요성 대두
- 2011.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에너지소비총량제의 시행효과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고, 예측 프로그램의 기능을 보완하여 사용자 편리성 도모
-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을 선도하고,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보다 앞선 신축 건축물의 2016년 패시브, 2023년 제로에너지 실천 로드맵 마련 필요

□ 추진목적

- 건축물 에너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건축물 에너지소비총량제 기준을 마련하여 에너지 저소비형 건축물의 설계기반 구축
- 2016년 패시브, 2023년 제로에너지 실천 로드맵을 수립하여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소비총량 관리 목표 및 비전을 제시하고자 함.

Ⅱ 추진경위

- 2011. 7. 20 건축물 에너지소비총량제 시행
 - 대상 : 바닥면적 합계 10,000 m^2 이상 신축 공동주택, 업무시설
 - 시행방법 : 건축심의(인허가시), 준공(사용승인시)
 - 프로그램 : BESS(Building Energy Simulation for Seoul)
- 2012.11. 22 에너지소비총량제 시행 효과분석 및 개선계획 수립
- 2012.11. 23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 완료 - 적정(조건부)
- 2012. 1. 30 용역 발주전 전문가 자문회의 실시
- 2012. 3. 15 건설기술(용역발주)심의 통과 - 조건부 채택

Ⅲ 용역개요

- 용역개요
 - 용역명 : 건축물 에너지소비총량제 전면시행 등을 위한 기술용역
 - 용역기간 : 계약일로부터 240일
 - 소요예산 : 173.690천원
 - 과업내용
 - 건축물 에너지소비총량제 전면시행을 위한 제반기준 분석
 - 건축물 에너지소비총량제 예측 프로그램 보완·추가개발 및 기준 마련
 - 2023 제로에너지 구현을 위한 달성 로드맵 작성
 - 예산과목
 -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, 아름답고 매력있는 도시건축조성 지원, 건축물 공공성 강화, 건축물 에너지소비총량제 시행효과 분석, 연구용역비

□ 주요용역내용

○ 건축물 에너지소비총량제 전면시행을 위한 제반 기준 분석

- 에너지소비총량제(녹색건축물 설계기준) 적용 건축물과 적용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한 데이터 분석 및 열분석 등을 통하여 에너지 사용량 분석
- 기존 시행정책의 효과를 조사하여 문제점(제도적 또는 기술적 등)을 파악하고 원인 분석을 통해 개선방안 마련하고, 전면실시에 따른 문제점 및 대안 제시

○ 건축물 에너지소비총량제 예측 프로그램 보완 및 개발

- 기존 평가프로그램의 기능상, 운영상 문제점을 검토 분석하여 보완
- 에너지다소비형 건축물인 판매, 숙박, 문화집회, 교육연구시설 등 다양한 용도로 확대할 수 있는 실용도별 예측 프로파일 개발 및 에너지소비총량 기준설정
-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평가 TOOL과 예측 프로그램의 결과 값 오차범위 최소화 하며 상호 인정될 수 있도록 개발

○ 2016년 패시브, 2023년 제로에너지 목표달성을 위한 서울시 녹색 건축물 조성계획 로드맵 마련

- 국내·외 녹색건축물 조성 및 에너지소비총량제 관련 법·예규·기술기준·지침 등을 현황 분석 및 검토
- 서울시 녹색건축물 조성 현황과 변화추이 및 미래전망에 대한 조사
- 조성계획 기본방향과 달성목표 수립 및 추진방향 도출
- 녹색건축물 조성 관련 계획에 따른 공사비 등 경제성 비교 검토
- 단계별, 연차별(신재생에너지 포함) 추진 로드맵 제시

○ 용역수행 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

- 에너지소비총량제 실시에 따른 국내·외 사례 및 신재생에너지 운영실태 조사
- 신축건축물의 2016년 패시브, 2023년 제로에너지 실천 로드맵 마련시 특별히 적용하여야 할 사항 제시

IV

용역시행방안

□ 계약방법 : 일반경쟁입찰(협상에 의한 계약)

-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 받아 「제안서 평가위원회」의 심사 기준에 의하여 평가한 후 협상적격자를 선정하고 협상절차에 따라 계약

□ 입찰참가자격

-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

-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업체로서 주된 영업소재지를 서울특별시에 둔 업체

- ① 건축사법 제7조 및 제23조 규정에 의거 건축사자격증을 취득하고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를 필한 업체로서 공조냉동기계 기술사 또는 건축기계설비기술사를 고용한 업체.
- ②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(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)에 의한 기계부문의 공조냉동기계 또는 건설부문의 건축기계설비 중 1개 분야 이상 신고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.
- ③ 기술사법 제6조(기술사사무소의 개설 등록 등)에 의한 기계분야의 공조냉동기계 또는 건설분야의 건축기계설비 중 1개 분야 이상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.

- 상기 응모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건축·설비·전기 등 관련 학회, 협회 등(산학 연구단 포함)은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와의 공동수급(공동 또는 분담 이행, 3개이내)이 가능

※ 입찰등록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,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여할 수 없음

V**향 후 계 획**

- 입찰공고 및 계약의뢰(재무과) : '13. 3월
- 제안서 및 입찰참가서 접수, 제안서 평가(건축기획과) : '13. 4월
- 계약 및 용역수행(8개월) : '13. 4 ~ 12월

붙임 : 1, 과업제안서(과업내용서 포함) 1부.

2. 산출내역서 1부. 끝.